

수원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가합186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대현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강수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가영

변론 종결2021. 7. 23.

판결 선고2021. 9.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4. 19.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60,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2018. 4. 19.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금형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화성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 2)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8. 5.경까지 C에게 몰드베이스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8. 4. 13. 기준으로 C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잔여 물품대금은 285,267,500원이다.
- 3) 원고는 2018. 7.경 C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173)를 제기하였고, 2018. 12. 12. 'C은 원고에게 343,032,500원¹⁾과 이에 대한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피고와 C은 2018. 4. 19. 피고가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는 2018. 5. 4.,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8년 제213호로 C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전부명령 및 전부금 수령 등

-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6. 14. C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220,000,000원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70,600,000원 등 합계 290,6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05257)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F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수원지방법원 2018차1611)을 하였고, F로부터 2018. 8. 13. 110,000,000원, 2018. 9. 11. 11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또한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G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2165)를 제기하였고, 2019. 3. 13. 'G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즉시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9020호 공탁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사유 신고를 하여 피고가 신속히 공탁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G은 2019. 4. 30.까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9. 4. 12.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9020호로 공탁된 공탁금 30,6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3. 기준으로 C에 대하여 285,267,500원의 잔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173)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2018. 5. 기준으로 343,032,500원이고, 이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전에 C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미 원고가

C에 대하여 285,267,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5,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4. 19.경 아래와 같이 2,735,373,31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화성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 등	2,249,373,310원	갑 제5호증
2	안산시 상록구 I, J호	279,000,000원	갑 제6호증
3	용산구 K, L호	207,000,000원	갑 제10, 11호증
합계	2,735,373,310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4. 19.경 당시 적어도 4,273,862,552원 이상의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2).

1	원고에 대한 채무	285,267,500원	앞서 인정된 사실
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3,563,725,161원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3	주식회사 M에 대한 채무	98,000,000원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4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	128,869,891원	이 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5	피고에 대한 채무	198,000,000원	을 제1호증
합계	4,273,862,552원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2018. 4. 19.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2015. 5. 20.부터 2017. 11. 13.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 원3) 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C의 F 및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전부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만족을 얻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나(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시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그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만약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C에 대하여 285,267,5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에 기하여 F 및 G으로부터 합계 260,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그 중 적은 금액인 260,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260,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260,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26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해일

판사신유리

판사이진규

1) 2018. 4. 13. 기준 잔여 물품대금은 285,267,500원이었으나, 이후 원고가 C에게 2018. 4. 30. 67,705,000원, 2018. 5. 31. 5,060,000원 상당의 몰드베이스를 각 공급하고, C으로부터 2018. 4. 30. 15,000,000원을 지급받아, 2018. 5. 30. 기준으로 잔여 물품대금은 343,032,500원(= 285,267,500원 + 67,705,000원 + 5,060,000원 - 15,000,000원)이 되었다.

2) 이외에도 C은 주식회사 유도, 주식회사 O, 한국전력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각 채권(채무)에 대한 가압류설정등기가 마쳐진 일자가 모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일 후로 구체적인 채권의 발생일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으로는 2015. 5. 20. 1,000만 원, 2015. 8. 17. 3,000만 원, 2016. 1. 8. 1,700만 원, 2016. 5. 12. 2,000만 원, 2016. 7. 28. 2,500만 원, 2016. 11. 22. 2,000만 원, 2017. 1. 25. 1,300만 원, 2017. 4. 29. 2,500만 원, 2017. 7. 30. 2,000만 원, 2017. 9. 26. 1,000만 원, 2017. 11. 13. 800만 원 합계 1억 9,800만 원을 대여하였다.